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경 찰 공 무 원 승 진 임 용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「경찰공무원법」 개정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신설(안 제16조)

나.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(안 제4조~제37조)

다.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사유 명확화(안 제13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 예정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1조제2항”을 “제1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법 제8조제3항제4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4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법 제24조제3항”을 “법 제3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지방경찰청”을 “시·도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 제8조제3항제2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방경찰청장”을 각각 “시·도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후”를 “이후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

제15조제1항 중 “법 제12조제1항”을 “법 제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법 제12조제1항”을 “법 제1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방경찰청”을 각각 “시·도경찰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지방경찰청장”을 “시·도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“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제1항”을 “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제1항부터 제5항”으로, “법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법 제11조의2”를 “법 제16조”로 한다.

제28조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9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4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19조제1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14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19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) ① ~ ③ (생략) ④ 「경찰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(이하 “심사승진”이라 한다)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(이하 “시험승진”이라 한다)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. 1. 2. (생략) ⑤ · ⑥ (생략)	제4조(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제15조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제5조(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(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. ⑤ ~ ⑧ (생략)	제5조(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법 제10조제3항제4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승진임용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.

1.~3. (생략)

4.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 정년이 연장된 사람

②·③ (생략)

제11조(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)

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기관의 장(이하 “승진대상자명부작성 자”라 한다)이 계급별로 작성한다.

1. (생략)

2.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(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: 경찰대학·경찰인재개발원·중앙경찰학교·경찰수사연수원·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(이하 “소속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

3.·4. (생략)

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

제6조(승진임용의 제한) ① -----

--.

1.~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30조제3항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)

① -----
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시·도

경찰청-----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정된 평정점(評定點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. 다만, 법 제8조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39조 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경력 평정점: 35퍼센트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1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, 지방경찰청장은 제2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, 통합된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각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른다.

1. 경찰청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: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

----- 법 제10조

제3항제2호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 시·도경찰청장-----

-----.

1. -----

자 명부 2.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 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: <u>지 방경찰청장</u> 또는 경찰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⑤ ~ ⑧ (생 략) 제13조(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)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 <u>이후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 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15조(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 성) ① <u>법 제12조제1항</u>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(이하 “중 앙승진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~ ⑥ (생 략) 제16조(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 성) ① <u>법 제12조제1항</u>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(이하 “보 통승진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는	----- 2. ----- ----- <u>시</u> · <u>도경찰청장</u> ----- ----- ⑤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) ----- ----- <u>이후 승진대상 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</u> 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 로</u> <u>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</u> 제15조(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 성) ① <u>법 제17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6조(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 성) ① <u>법 제17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
--	--

경찰청·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17조(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)

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. 다만,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: 지방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

제18조(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)

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, 보통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.

제17조(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)

① -----

-----.

-- 시·도경찰청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 시·도경찰청 -----

제18조(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)

① -----

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
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(경찰
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
경우 지방경찰청장을 말한다)의
승인을 받아 소집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22조의2(동료·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) ① 임용권자(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나 임용제청권자(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·동일·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,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----- 시·도경찰청장 -----
----- . 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동료·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) ① -----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제1항부터 제5항-----

-----법 제7조제1항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근속승진) ① 법 제11조의 2에 따른 근속승진(이하 “근속승진”이라 한다) 기간은 제5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28조(시험 실시권의 위임) 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37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)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전투, 대(對)간첩작전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.

제26조(근속승진) ① 법 제16조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시험 실시권의 위임) ----

---- 법 제20조제1항-----

----.

제37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)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-----

-----.

③ <u>법 제14조제1항제3호</u>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 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 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. 1. ~ 6. (생략) ④ (생략)	③ <u>법 제19조제1항제3호</u>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인사담당관	
연 락 처	(02) 3150 - 1207